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4.  
외교통일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5월 2일, 김건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5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2026년 3월 6일)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년 3월 6일)

상정 · 심사 · 의결(수정가결)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2026년 3월 17일)

상정 · 소위 심사보고 · 의결(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건의원)

현행법은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함)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관이 해외에서 가지는 대표성을 고려할 때, 외교 및 영사 사무 외에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또는 기관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러한 업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 등이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 5조의2 신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꺾 현 준)

현행법은 재외공관의 종류, 설치 기준, 공관의 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공관의 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이나 기타 단체의 원활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u>&lt;신 설&gt;</u> | <p><u>제5조의2(협의체 운영)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관장은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법인·단체 등의 원활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협의체의 구성이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는 사항은 아닌바, 현재도 재외공관장은 현지 상황에 맞추어 ODA 현지 협의체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등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ODA 현지 협의체’는 KOICA와 수출입은행의 현지 사무소 및 ODA에 참여 중인 현지 기업 등이 참여하며, 각 기관이 주재국의 ODA 관련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공관에 협조 필요 사항 등을 건의함.

예를 들어, 우리 정부의 중점협력국 중 하나인 페루 대사관에서는 2024년 9월 KOICA 페루 사무소, 한-페루 디지털정부협력센터(DGCC) 및 공공행정 분야 ODA 사업에 참여 중인 민간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공행정분야 ODA 현지 협의체’를 개최하여 주요 ODA 사업 현황 및 계획,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였음.<sup>1)</sup>

한편, 2024년 4월 1일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서명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따라 우리 중소벤처기업 진출이 활발한 지역 소재 25개 공관에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설립하여 운영 중임.<sup>2)3)</sup>

예를 들어, 우리 중소기업이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에서 개최한 1차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회의에서 독일에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등 절차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제기하였는데, 협의체 참여자들의 각종 지원조치<sup>4)</sup>로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이처럼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ODA와 기업 진출 분야에서 협의체가 구

---

1)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2) 「2024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 외교부, 2025. 5. 17p.

3) 【참고자료 1】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요 (p. 6)

4)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독일 시(市)정부, 주(州)정부, 지역상공회의소에 인허가 지원을 요청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기업에 행정업무 및 현지 홍보를 지원하며, 코트라는 무역사절단을 운영하여 해당 기업의 상담회를 주선하였음.

성되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은 이러한 협의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참고로, 「산업발전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입법례 >

| 법률명       | 조문                                                                                                                                            |
|-----------|-----------------------------------------------------------------------------------------------------------------------------------------------|
| 산업발전법     | 제35조(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의 산업협력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산업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고 강화할 수 있다.<br>② 정부는 산업협력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제19조(전문 인력의 양성) ②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 지능정보화기본법  | 제1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다만 동 법률이 재외공관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 공관의 설치 기준, 공관장의 설치 근거 등 공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직법적 성격임에 반하여, 개정안은 공관장의 업무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행법의 성격과 다소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sup>5)</sup>

5) 대안으로 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재외공관의 업무 분장 사항에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과, ②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협의체 분야와 관련한 개별 법률에 협의체의 구성·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있음.

또한, 개정안은 협의체의 목적을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운영 중인 ‘ODA 현지 협의체’와 ‘재외공관 중소기업 지원협의체’를 고려한 예시로 보임. 그러나 향후 타 분야의 협의체 신설 가능성을 감안할 때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동 개정안에 대하여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기존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의 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동 개정법률안을 통해 재외공관의 통합·조정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김 건)

- 동 개정안을 수정하여 의결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 7. 심사결과

수정가결

####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외교통일위원장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현행법의 체계를 고려하여 조문 위치를 조정하고, 협의체의 구성 목적을 명확히 하며, 협의체의 참여자를 명시하는 등 재외공관의 장이 운영하는 협의체의 기본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등).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2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협약체의 구성·운영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관장은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 및 문화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신설> | 제5조의2(협업체 운영)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관장은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법인·단체 등의 원활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협업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협업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
| <신설> |                                                                                                                                                                              | 제8조(협업체의 구성·운영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관장은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 및 문 |

|  |                                                                                                                                                                                                                                                                                           |
|--|-------------------------------------------------------------------------------------------------------------------------------------------------------------------------------------------------------------------------------------------------------------------------------------------|
|  | <p><u>화교류 등에 관한</u><br/><u>사항을 협의하기</u><br/><u>위하여 관할 구역</u><br/><u>의 행정기관 및 그</u><br/><u>밖의 기관·법인·</u><br/><u>단체 등으로 구성</u><br/><u>된 협의체를 구성</u><br/><u>· 운영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u><br/><u>협의체의 구성 및</u><br/><u>운영 등에 관하여</u><br/><u>필요한 사항은 대</u><br/><u>통령령으로 정한다.</u></p> |
|--|-------------------------------------------------------------------------------------------------------------------------------------------------------------------------------------------------------------------------------------------------------------------------------------------|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협약체의 구성·운영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관장은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 및 문화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lt;신    설&gt;</u> | <p><u>제8조(협약체의 구성·운영 등)</u></p> <p>① <u>제5조제1항에 따른 공관장은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 및 문화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